

마약성 진통제 “펜타닐(패취제)” 안전사용 안내서(환자용)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펜타닐 패취제’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1. ‘펜타닐’은 어떤 약물인가요?

- ‘펜타닐’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마약(아편계, 오피오이드계)으로 지정되어 있는 약물로서,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
2. ‘펜타닐 패취제’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가요?

-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,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물이 아닙니다.
 -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미한 통증이나, 수시 처방이 필요한 간헐적인 통증의 조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 -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.
 -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

※ 만성통증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(인지행동 치료, 물리치료 등)가 우선이며, 마약성 진통제를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

3. ‘펜타닐 패취제’는 얼마나 투여하나요?

- ‘펜타닐 패취제’ 1매를 3일(72시간) 사용 합니다.

4. ‘펜타닐 패취제’ 사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더 많은 용량을 갈망하게 되거나 금단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야 합니다.
※ 하품, 재채기, 눈물흘림, 땀흘림, 구역, 구토, 설사, 복통, 동공 확대, 두통, 불면, 불안, 헛소리, 경련, 떨림,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, 호흡촉박, 가슴 두근거림 등
- 다른 마약성 진통제, 수면제, 알코올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함께 복용 시 호흡억제, 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호흡곤란, 느린호흡, 불규칙호흡,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,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.
- 임의로 한 번에 더 많은 패취제를 붙이거나 사용 간격을 줄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포함)를 기입하여야 하고, 처방전에 따라 조제 등 취급한 마약류의 내역은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포함)와 함께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

1)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,
※ 의사는 열람사실을 조회 전 환자에게 통보

2) 그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1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제2항제3호
- 2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

전국상담 대표전화 1899-0893



제한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